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e-voucher.kosaf.go.kr)에서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방문신청용]

- ※ 작성방법, 유의사항,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기준 등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교육활동지원비)는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본인(만 14세 이상), 수급자(학생)의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 세대 성인 세대원)가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권자가 아닌 자의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급여 대리수령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쪽 중 제1쪽)

신청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이내	
신청인 정보	성명(국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 소		
	휴대전화번호(연락가능한 번호 필수)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필수)	
	지원대상자(교육급여 수급자(학생))와의 관계	본인 [ ] 수급자(학생) 본인(만14세 이상) 보호자 [ ] 복지수급 정보상 교육급여 신청인 [ ]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보호시설 [ ]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으로 등재된 시설장	
지원 대상자 (교육급여 수급자) 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13자리)	성 명 주민등록번호(13자리)
	성 명	주민등록번호(13자리)	성 명 주민등록번호(13자리)
	성 명	주민등록번호(13자리)	성 명 주민등록번호(13자리)
	성 명	주민등록번호(13자리)	성 명 주민등록번호(13자리)
	성 명	주민등록번호(13자리)	성 명 주민등록번호(13자리)

### 신청내용

※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기간은 지금 학년도를 기준으로 다음 학년도 8월 31일까지입니다. 예시1> '24학년도 바우처를 '24년 연내에 수령하는 경우, '25년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예시2> '24학년도 바우처를 '25년 6월에 수령하는 경우, '25년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 [ ]이용 중인 신용(체크)카드로 바우처 받기 [ ]간편결제(페이코)*로 바우처 받기 * 간편결제는 신청자(카드 사용자)가 만 17세 이상인 경우만 선택 가능합니다.
	지급수단 정보 (신용 · 체크카드 선택시) [ ]KB국민 [ ]NH농협 [ ]롯데 [ ]삼성 [ ]신한 [ ]우리 [ ]하나 [ ]현대 * 은행 연계 카드의 경우 아래 금융기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BC 제휴 [ ]IBK기업은행 [ ]새마을금고 [ ]수협은행 [ ]우체국 [ ]신협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제주은행 KB국민 제휴 [ ]전북은행
	지급수단 정보 (간편결제 선택시) 카드 배송주소 (페이코 실물카드) ※ 간편결제 선택시 '페이코 실물카드'를 발급하여 기재하신 주소로 배송해드립니다. ※ 필수동의[ ]: 카드발급과 바우처 지급을 위해 페이코에서 회원 ID/PW를 부여하고 한국장학재단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미동의시 페이코 신청 불가)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교육급여 바우처 발급 대상자(수급 학생)가 10명을 넘어 지면을 초과할 경우 해당 쪽을 추가로 출력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 기재 및 문자서비스 수신에 동의([ ]란에 ✓ 표시)하여야만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결과 통보 등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지급수단은 1가지(신용 · 체크카드 1곳 또는 간편결제)만 선택 가능하며, 2가지 이상의 지급수단 신청을 원할 경우 각 지급수단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지급수단, 배송주소 등)를 잘못 작성한 경우 바우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동의와 기타 유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교육급여 바우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 도교육감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p>첨부서류 (필수) 필수서류를 확인하였음 [■]</p>	<p>1. (공통 필수서류)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등 <u>신청인의 신분증명서 1부(신분증 원본을 제시)</u>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분증 외 <u>추가 보완 서류 제출 필수</u> [※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외국인 신청인: 신분증 외 <u>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u> 필수 추가 제출            - 신분증에 주민등록번호 일부(생년월일)만 표기된 경우: <u>주민등록번호 13자리 확인이 가능한 공적 서류 1부(주민등록표등본 등)</u> 필수 추가 제출</p> <p>2. (신청인별 추가 서류) 신청권자별 상이 [※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1) 신청인이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본인(만 14세 이상)인 경우: 추가서류 없음            2) (선택제출) 신청인이 복지수급정보상 교육급여 신청인인 경우: 교육급여 수급자(학생)의 주민등록번호(13자리) 확인이 가능한 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공적 서류) 1부(* 필수 제출사항은 아니며 필요시 지침 권장)            3) (필수제출) 신청인이 주민등록정보상 교육급여 수급자(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인 경우:  <u>주민등록표등본 1부(수급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 필수)(* 시설장: 주민등록표등본, 시설 신고증 각 1부)</u></p>
<p>방문신청 접수 담당공무원(직원) 확인사항</p>	<p>1. 신청인이 제출한 본 신청서와 신분증, 첨부서류를 통해 신청인 본인 여부 및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권자 여부(신청자격)를 확인하여야 하며, 교육급여 바우처 시스템에 해당 신청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포함)는 본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관련 법에 따라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모두 동의(필수)하여야만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이 가능함을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신청서상 동의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미동의한 경우 신청 접수 불가)</p>

###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기준 [동의 필수]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 지급 · 사용에 관한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동의 거부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이 제한됩니다.  
본 이용기준은 향후 교육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① 교육급여 바우처는 신청인이 선택한 지급기관 및 수단을 통해서만 사용 가능하며, 교육급여 바우처가 신청인에 배정 완료된 이후에는 기선택 지급수단을 변경할 수 없다.
- ② 학생 본인이 아닌 보호자가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0명까지 일괄 신청 가능하다. 이 경우 일괄 신청한 지급 대상자에 배정되는 전체 금액이 신청인이 선택한 지급수단으로 일괄 배정된다.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신용 · 체크카드로 신청하는 경우 추가 인원 신청시에는 기존 신청시 선택한 지급기관이 아닌 다른 지급기관으로만 신청 가능)
- ③ 신청과정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초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정보를 기준으로 매년 별도 신청 없이 바우처 배정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 경우 해당 학년도 바우처 개시 1개월 전 기등록된 신청 정보를 안내(신청인에 문자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급여 바우처 변경 신청의 기회를 제공한다.  
(신용 · 체크카드 외의 지급수단(전용카드 등)은 다음 학년도 계속사용이 불가하며 매년 재신청 필수)
- ④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는 신청인별 배정금액에 따라 여러 장의 전용카드(카드간 금액 이전 불가)가 제공될 수 있다. 또한, 분실, 미수령 등에 따른 재발급(절차 · 횟수제한 등)은 카드사 정책에 따라 지원하며, 전용카드는 수령인 책임하에 사용해야 한다.(분실 등에 따른 바우처 차감액 보전 불가)
- 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자(학생)의 교육활동지원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은 매년 교육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등을 할 수 없다
- ⑥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용 · 체크카드로 발급받은 경우 본인의 신용한도 또는 계좌잔액과 함께 사용하는 복합결제를 이용할 수 있다. (카드사 회원에게 제공되는 카드사 포인트/타 바우처 외의 복합결제 사용은 불가능)
- ⑦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 및 취소(환불, 반품 등)에 관한 사항은 지급기관(카드사 등) 및 사용 가맹점(상점)의 정책에 따른다. (온 · 오프라인 상점 이용시 카드사에서 지정하는 결제 방식 준수 필요)
- ⑧ 해당 학년도의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잔액은 국가로 자동 반납되며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 ⑨ 신청인(수급 학생 또는 가계)의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및 사용과 관련하여 축적된 정보는 한국장학재단에 보관되어 정부의 정책관리 목적으로만 활용된다.
- ⑩ 정책관리 목적으로 교육부 또는 관할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경우 교육급여 바우처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거나 재개할 수 있다. (\*복지수급 자격여부 확인 및 조사 등 진행)
- ⑪ 매년 교육급여 바우처 운영에 대한 기준은 교육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바는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규정에 따른 교육부의 유권해석으로 결정한다.

본인은 위 이용기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동의 필수]

한국장학재단은 교육급여 바우처 운영 위탁기관으로 교육청 지급의뢰 업무를 위탁받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교육급여),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교육급여)에 따른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및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1. [동의 필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 이용 항목	수집 · 이용 목적	보유 · 이용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급여바우처 신청자 정보(이름, 생년월일, <u>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u>, 휴대폰번호, 주소), 교육 급여 수급자 정보(이름, 생년월일, <u>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u>,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주소), 연계정보(Cl), 중복가입확인정보(DI), 바우처 지급수단 정보, 바우처 사용 내역, 간편결제사(NHN페이코) 회원 ID/PW, 복지 ID, 신청번호, 고객번호, 신청일시, 수급자 학사정보(학교명, 학교코드, 학제, 학년, 반), 수급자의 학교 관할 시도 교육청 정보, 교육 급여 신청인 정보(이름, <u>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u>,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지급취소사유,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주명, 수급 자와의 관계, 급여 예외지급 대상자(대리수령인 등) 정보(이름, <u>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u>, 은행명, 계좌번호)</li> </ul>	교육급여바우처 신청 및 처리 (신청접수, 지급, 사용지원, 안내 등)	<u>교육급여 바우처 지급</u> <u>자격상실 이후 5년</u>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표등 · 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국내거소사실 증명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또는 고유번호증)	교육급여바우처 신청 및 처리 (신청접수, 지급, 사용지원, 안내 등) (방문신청 또는 외국인, 성명 정보 불일치 등의 사유로 전산정보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위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교육급여바우처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 필수]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체크)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 2. [동의 필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기관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 기간
<u>한국교육학술정보원</u>	<u>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 및 지원대상자 확인, 바우처 지급결과 확인</u>	교육급여바우처 신청자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바우처 지급내역, 바우처 지급수단 정보, 지급취소사유, 수급자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수급자와의 관계, 복지ID, 신청일자, 수급자의 학교 관할 시도 교육청 정보	
<u>카드사(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 국민카드, 비씨카드)</u>	<u>바우처 포인트 지급 및 사용지원 (선불전자지급 수단 발행)</u>	교육급여바우처 신청자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폰번호), 고객번호, 신청번호	<u>교육급여 바우처 지급 자격상실 이후 5년</u>
<u>간편결제사 (NHN 페이코)</u>	<u>바우처 포인트 지급 및 사용지원(선불전자지급 수단 발행), 간편결제사 회원가입(교육급여 바우처처용 ID/PW 생성), 실물카드 발급 및 배송</u>	신청자 이름, 고객번호, 신청번호, 연계정보(CI), 성인 여부, 성별, 생년월일, 카드 배송지 주소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교육급여바우처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 필수]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체크)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 3. [동의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전 동의(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한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

한국장학재단은 매 사업연도마다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하기 위하여 공공마이데이터를 이용하여 교육급여 수급자(학생)와 신청인의 동일세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동의 및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한 본인 정보 제공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본인 정보 제공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 및 요구하지 않을 경우 교육급여 바우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공동이용의 목적	▪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을 위해 교육급여 수급자(학생)와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의 동일세대 여부 확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및 이용 범위	▪ 주민등록표 등 · 초본(보유기관: 행정안전부)
공동이용 대상 이용기관의 명칭	▪ 한국장학재단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방법 안내	▪ 공공 마이데이터(MyData)란 정보주체인 국민이 행정·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받아 본인이 직접 다양한 공공·민간 서비스 수혜 등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의 필수] 본인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정보를 한국장학재단에 제공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 체크)

※ 본 동의 이후 동일한 목적 또는 이용범위 내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구함 [  ]요구하지 않음 [  ]

#### [고지사항] 개인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안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목적	개인정보 항목	처리근거
교육급여바우처 신청 및 처리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목적	개인정보 항목	처리근거
교육급여바우처 신청자 및 지원대상자 확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바우처 포인트 지급 및 사용지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본인은 위 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등에 대한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여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